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16404호, 2019. 4. 30. 공포, 11. 1. 시행)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 7. 24. ~ 9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제1항 중 “법 제44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.

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의3]

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(제25조의3제1항 관련)

1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가.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(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 받은 경우
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

2. 이행강제금은 「(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 $\times$ 65/100) $\times$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 $\times$ 6」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“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”와 “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”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를 말한다. 다만,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받은 날부터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날 사이에 그 수가 변경되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를 말한다.

나.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액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하는 금액(이하 “정부지원액”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$[(\text{만 0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 + (\text{만 1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 + (\text{만 2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 + (\text{만 3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 + (\text{만 4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 + (\text{만 5세인 자녀 1명당 정부지원액})] \times 50/100 \div 6$
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3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) ① <u>법 제44조의3제1항</u>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 ② ~ ④ (생략)	제25조의3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) ① <u>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55